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76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권향엽 · 강준현 · 김동아
최민희 · 김 윤 · 박지혜
김남근 · 김성희 · 박지원
이주희 · 안태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없음.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항공안전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바 있음.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고 등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는 제2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2조의2(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다.</u> <u>② 국토교통부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u>③ 국토교통부는 제2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